

2022년도 국제학술대회



Symposium

근대국가의 몸관리 그리고 유교적 ‘身’(몸)

2022. **01. 14** (금) 10:30~18:45

줌 온라인 회의실

접속 링크 <https://bit.ly/3rgyJ05>

주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일 정 |

10:30~10:50	온라인 회의실 입장 개회사 변주승(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단장)
제1부 몸의 제도학 1부 사회자 이대승(전주대)	
10:50~11:15	발표1_ COVID-19 : 글로벌 위기의 대규모 예습(COVID-19 : 全球危機的大規模預演) 왕샤오밍(王曉明, 중국 상하이대)
11:15~11:40	발표2_ 일제강점기 사형제(死刑制)와 그 담론 전병무(강릉원주대)
11:40~12:20	1부 종합 토론 토론자 고재원(가톨릭대), 변은진(전주대)
점심·휴식	
제2부 근대 인간과 몸 2부 사회자 장순순(전주대)	
13:30~13:55	발표3_ 앙가주망과 민속미학: 이애주의 바람맞이춤과 그 뿌리로서의 한성 준과 한영숙 이연숙(일본 히토쓰바시대학)
13:55~14:20	발표4_ 일본 내 한센병 요양소에서 재일조선인 여성(日本国内ハンセン病療養所における在日朝鮮人女性) 김귀분(일본 국립한센병 자료관)
14:20~14:55	발표5_ 한국 근대 수영복의 등장과 신체의식 변화 김윤정(전북대)
14:55~15:55	2부 종합 토론 토론자 : 홍성덕(전주대), 이정옥(전주대), 박선영(전주대)
휴식	

제3부 몸에 관한 유교적 담론		3부 사회자 문경득(전주대)
16:00~16:25	발표6_ 유학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어머니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이향준(전남대)	
16:25~16:50	발표7_ 한말의 수신 교육과 휘문의숙(徽文義塾)의 『고등소학수신서』 서정화(전주대)	
16:50~17:15	발표8_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그리고 유교적인 것 전종윤(전주대)	
17:15~18:15	3부 종합 토론 토론자 : 이경배(전주대), 신상후(한중연), 손윤락(동국대)	
제4부		
18:15~18:45	연구자 윤리교육	
18:45~	폐회식	

| 차 례 |

제1부 몸의 제도학

COVID-19 : 글로벌 위기의 대규모 예습(COVID-19 : 全球危机的大规模预演)	
_왕샤오밍(王晓明, 중국 상하이대학교)	9
번역문 _COVID-19 : 글로벌 위기의 대규모 예습 / 19	
토론문 _고재원(가톨릭대학교) / 30	

일제강점기 사형제(死刑制)와 그 담론 _전병무(강릉원주대학교) 33

1. 머리말 / 34
2. 사형제의 법률적 근거 / 34
3. 사형집행의 추이와 특징 / 41
4. 사형제를 둘러싼 담론과 논쟁 / 47
5. 맺음말 / 53

토론문 _변은진(전주대학교) / 54

제2부 근대 인간과 몸

양가주망과 민속미학: 이애주의 바람맞이춤과 그 뿌리로서의 한성준과 한영숙(Ethno-Aesthetics and Engagement: On Yi Aeju's Dance of the "Winds in Open Arms" and Its Roots in Han Sŏngjun and Han Yŏngsuk) _이연숙(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	59
--	----

1. Introduction / 60
2. "Winds in Open Arms" and Engagement / 62
3. Yi Aeju's Ch'ump'an of "Winds in Open Arms" / 64
4. "Winds in Open Arms" and the Korean Tradition of Ethno-Aesthetics / 70
5. Conclusion / 77

토론문 _홍성덕(전주대학교) / 81

일본 내 한센병 요양원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여성(ハンセン病療養所における在日朝鮮人女性) _김귀분(일본 국립한센병 자료관) 85

- 1.はじめに / 86
2. 発病と入所に至る経緯 / 88
3. 療養所内のくらし—患者作業 / 93
4. 療養所内のくらし—日常生活・結婚 / 99
5. 識字と在日朝鮮人女性 / 103
6. おわりに / 108

번역문 _일본 내 한센병 요양원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여성 / 110

토론문 _이정옥(전주대학교) / 132

한국 근대 수영복의 등장과 신체의식 변화 _김윤정(전북대학교) 137

1. 머리말 / 138
2. 해수욕과 수영-새로운 육체활동의 시작 / 141
3. 수영복의 패션화와 미의식의 변화 / 149
4. 나체의 해방 공간, 해변 / 154
5. 맺음말 / 156

토론문 _박선영(전주대학교) 158

제3부 몸에 관한 유교적 담론

유학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어머니 _이향준(전남대학교) 165

토론문 _이경배(전주대학교) / 196

한말의 수신 교육과 휘문의숙(徽文義塾)의 『고등소학수신서』

_서정화(전주대학교) 201

1. 서론 / 202
2. 『고등소학수신서』의 구성 및 체제 / 205
3. 『고등소학수신서』가 추구하는 인재상 / 209
4. 결론 / 223

토론문 _신상후(한국학중앙연구원) 224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그리고 유교적인 것 _전종윤(전주대학교) 229

1. 들어가는 말 / 230
2.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 232
3. 유교적인 것과 욕망의 문제 / 249
4. 나오는 말 / 256

토론문 _손윤락(동국대학교) / 260

제1부

몸의 제도학

COVID-19：全球危机的大規模預演

王 晓 明 | 上海大学文化研究系

感谢全州大学韩国古典研究学研究中心HK研究团的邀请，让我来担任这一次“管理现代国家的身体和儒教的身体”国际学术会议的演讲人。

2019年底开始爆发、一直持续到现在的COVID-19的全球大流行，突出地显示了“现代人的身体如何被管理”这个大问题的重要性，至少在最近两年里，在全球范围内，“控制COVID-19”几乎成了“控制现代人的身体”的最重要的部分。

如果将“儒教”理解为中国社会和文化的重要的代名词之一，我就觉得，分析这两年中国控制COVID-19的疫情的成败得失，是讨论这次会议的主题的一个合适的方式。

从中国的角度来看，与COVID-19的全球杀伤力同样令人吃惊的，是这样一个事实：当大多数欧美国家都控制不住疫情的时候，中国的疫情却在一度失控后迅速得到了控制。欧美国家的医疗条件和政府的治理水平，一直都被普遍看作比中国优越的，为什么碰到这个COVID-19疫情，中国却明显比欧美做得好呢？

中国的官方媒体说，这是显示了中国的集权体制的优越；很多非官方的中国人也这么看；还有不少非中国的评论家，也不同程度地这么看。

这实际上是提出了一个当代政治的大问题：如果说人类政治的进步方向，应该是指向民主和公民共同决策，而不是指向集权和官员全权包办，那我们该如何解读这一个似乎明显是反向的例子？难道说，在“控制现代人的身体”这一方面，名誉不佳的集权体制，反而是比民主政体更有效力的？由此扩大来看，21世纪的人类生活，是否可能给出与20世纪完全不同的政治启示：民主并非国家政治和社会政治的唯一/第一应选之项，集权同样是一个可选之项？

接下来，我将通过介绍如下三方面的情况，来试着回答上述这个大问题：

中国的集权政府在这一次抗疫之中做得怎么样？它能不能靠自己的力量控制住疫情？

如果集权政府单靠自己的力量并不能控制住疫情，社会的主流价值观是如何给它帮忙的？

除了集权政府和社会主流价值观的合作，还有什么别的力量，也在控制疫情这个事

情上起了大作用？

1.

2019年12月，COVID-19的疫情开始在武汉蔓延，当地政府的反应却相当荒唐：先是完全不重视，接着就习惯性地对公众和上级政府隐瞒，因此，差不多一个月之后，疫情才引起中央政府的警觉。可就在这段时间里，疫情不但从武汉传播到了全国，也开始从中国传播到了国外的许多地方。

这当然是明显地暴露了集权体制的弊病：政府太强大，社会太弱小，如果政府不行动，其他力量即便想行动，也缺少行动的空间。

集权政府不及时行动，后果就非常严重。

第一个直接的后果是：从1月23日开始，武汉这座有一千万人口的大城市，被迫严密地封闭了一百多天，武汉市民承受了巨大的灾难。

更大的一个后果是：COVID-19的疫情的迅速传播，激起民众对于集权体制的普遍不满，甚至在一定程度上强化了对于中央政府的信任危机。

第三个后果的范围更大：COVID-19的大流行，明显激化了世界上其他地方的官方——和相当一部分民众——对中国政府的普遍的不满。

以上这些原因汇合在一起，令中央政府非常被动：它完全失去了谨慎和从容应对的时机，只能采取孤注一掷式的极端手段——即所谓“将疫情清零”的模式——来压制疫情；在民众普遍不满的情况下，它那种凡事集权的习惯做法，更令它没有退路，抗疫只能成功，不能失败。

这种孤注一掷式的抗疫模式，主要有两个特点：

一，“集中全力于一个方面，不惜牺牲其余方面”，也即抗疫压倒一切，社会生活的其他需求：经济的、民生的、交通的、人际交往的、社区生态的……统统都只能为抗疫让路。

二，“侧重于分隔/封闭”，疫情越紧急，政府就越本能地发布各种禁令：断路、封城、关闭公共服务、停运公共交通、在全国范围内设立无数的禁止通行的关卡，甚至封闭（医院无法接收的）患病者和疑似患病者的家门……

应该说，2020年2月以后集权政府的整体的抗疫的表现，是比2003年控制SARS疫情的时候积极得多，也取得了去了明显较为出色的。

但也要看到，随着这种高度集权的抗疫模式的迅速推广，不只是COVID-19的病毒，几乎全体中国人的身体和生活，实际上也遭遇了空前的严厉控制。这当然意味着惨重的社会代价，直到今天，随着各地不断爆发小规模在疫情，这样的全面控制和社会代价，就仍然在继续。

当然，集权政府再强大，能力也是有限的。它或许能有效地禁止民众做某些事情，却很难大规模地驱动民众持续地去做它认为该做、民众自己却不愿意做的事情。

中国政府这一次的孤注一掷式的抗疫模式，恰恰对民众提出了非常高的要求：看上去它只是对民众发布禁令，但因为它要禁止的事情太多，禁止的时间也太久，这些事情对民众生活的损害又太大，这些禁令就同时也是在要求民众的赞同，只有取得了民众的广泛的赞同，这些禁令才能够有效地实施，比如说，要民众停止面对面的人际交往和谋生活动，或者尽可能快地普遍接种国产疫苗，都不是单用强制手段就能做到的。

因此，政府能否靠集权体制控制住疫情，还得看另外一个力量——社会的主流价值观——是否能帮助它获得民众对那些禁令的赞同。这里说的“主流价值观”，是指社会大多数成员实际奉行的价值观，而不是中国政府公开提倡的价值观。

2.

这就要说到第二方面的情况了：今天中国的主流价值观，是如何回应集权政府对它

的合作的需求的？

在介绍这个主流价值观如何反应之前，我先简单概括一下它现在的两个最重要的特征：

首先，它是一种聚焦于资本主义式的经济富裕的价值观，尽管在1980年代，它曾经热烈地追求过西方式的政治民主和文化开放，但现在它已经基本上放弃了对这两个目标的追求。

其次，它基本上是以狭隘的“个人”为本位的价值观，这意味着它常常缺乏对于公共事务的足够的关注，也意味着它相信，对于孤单的“个人”来说，现实——尤其是其中的一党专政的政治现实——是过于强大，因此难以改变的。

正因为是这样一种以持续膨胀的求富之心为核心的价值观，它就很自然地将一种被尊称为“生命”的东西，选为自己的第一寄托。

这选择的逻辑大致是这样的：既然“革命”、“民主”之类的理想大都可疑，那就只有物质利益才显得真实和可信，既然公共之善是不可求的，那就该聚焦于个人之得，既然未来难以把握，那就专注于眼前的享受吧，而既然这一切都势必归到此刻之我的身上，肉体生命就自然成为了重中之重：它是“我”的存在的根基，是我得以享受物质富裕的前提，而且，它还是我自己可以掌控的对象！对今天的绝大多数中国人来说，能够掌控的事物实在不多，这个“生命”自然会成为“我”最看重的东西，尽管这种以为“我”可以掌控自己“生命”的信念，其实是个错觉。

难怪这个“生命”有那么多别名：对于中青年白领来说，它叫“健身”和“养生”，对于老年人来说，它叫“健康”和“长寿”，对于女性来说，它叫“减脂”和“美容”，对于少儿来说，它叫“营养学”和“智力开发”……当然，对所有人来说，它更首先叫作“活着”：正是因为“活着”，我们的“身体”才有资格代表“生命”！

从这个角度完全可以说，今天中国的主流价值观，就是一种“身体”至上、以“管控身体”为要务的价值观。

这样的主流价值观，一定会热烈响应集权政府的要求，推动民众赞同那些加在自己身上的禁令：COVID-19所威胁的，正是我们最看重的“生命”，抗疫当然应该压倒一

切；政府的管制再粗暴，也是为了保障我们能“活着”，那又有什么可抱怨呢？

正是在主流价值观的积极的配合之下，集权政府的各种抗疫的管制，大都得到了有效的推行，至少到目前为止，无数民众依然遵守各种严厉的禁令，忍受因此而来的各种持续的困苦。

不过，事情还有另外一面。今天中国的主流价值观所理解的“生命”，并非如佛家所说的那样，等值地分属于天下的“众生”，而是有鲜明的等级差别的。它首先是指“我”的个人生命，然后依据亲疏远近，一圈一圈向“我”之外推广，每推远一圈，生命的价值就降低一分，到了与“我”无关的人那里，其生命就差不多降到令“我”无感的程度。

这就是为什么，武汉一封城，不用中央政府强力号召，各地各级的政府，都自动地雷厉风行，断路、封门、拦截车辆，停运航班，恨不得把“我”之外的所有人，一个不漏地挡在“我的”安全距离之外。即便后来中央政府三令五申，要求各地放松封禁，许多基层政府依然拒不执行：相比于给“与我无关者”提供方便，为“我”的生命安全多加一道保险，总是更“至上”的吧！

这一年多来，COVID-19的无症状感染者越来越多，这大大提高了区别“我”和“与我无关者”的难度，即便最自私的人，也不得不把头伸出家门，关心周边的状况。

但是，这种被“自爱”（爱自己的生命）逼出来的“公共”意识，很容易转到激化人与人之间互不信任、甚至互相敌对的方向上去。越是不知道安全的边界线在哪里，就越本能地扩大自己的安全范围，不惜为此侵占别人的安全范围，甚至剥夺别人的人身权利：这种“生命至上”的价值观的阴暗底色，由此暴露无遗！

网上流传一句感叹：中国的民众“真听话，真怕死”。在我看来，“真怕死”才是关键，它一面有效地说服民众“听话”，一面也恶化了人与人的关系，加重了抗疫的社会代价。

3.

集权政府和主流价值观，是今天中国的两个最大的力量，但是，疫情之所以在中国比较快地被控制住，却不只是靠了这两个力量的合作，还有别的很多力量，也在其中起了作用，其中最重要的，是民众的向善之心，是由此体现的中国社会的自我救助的能量。

还是以武汉为例：就在1月23日封城的当天，四千多私家车主自己组织起来，义务接送医护人员；两百多家小旅馆的老板也组织起来，免费向医护人员提供住宿，一周内总数就达4万余间/晚；许多住宅小区里，都有志愿者为遇到困难的邻居们买菜送药；更有一位绰号“老猫”的市民，组织近百位志愿者，走街穿巷三个月，救助因疫情而无人照看的猫……

这样的事情不只发生在武汉，全国各地有无数人在做着同样的事。我今天没有时间多做这方面的介绍，只说一句：民众的无数义举，不但极大地帮助了集权政府的社会动员，更在维持基层政府网络的应急运作当中，发挥了巨大的支撑作用。很多被外界视为集权政府的有效运作的事情，其实有很大一部分，是民众的自发的行为。

4.

无论中国还是别的地方，现在都还没有走出COVID-19的疫情的危机。

即便这场疫情在今年以后的某个时候终于结束了，它所凸显的当今世界结构的倾斜，人类生活的失调，也都将继续存在，甚至继续扩大：“疫情过后怎么办”，是比“如何面对疫情”更难回答的问题。

更重要的是，随着全球范围内各种危机以加速度的频率接连爆发，这两个问题之间的关联越来越广泛和深刻。这一次各国政府的疫情管制，之所以在许多地方引发激烈

的抗议运动，一个关键的原因，就是很多人看到了“非常状态”与“正常状态”的深刻互动：有很多“非常状态”，正是它之前的“正常状态”造成的，也有更多的“非常状态”，会改变其后的“正常状态”。比如，如此接二连三的危机体验，会不会造成政府和民众两方面的政治麻木，政府本能地倾向于在危机之后，延续那种被危急授予了正当性的严厉的管控举措，民众则因为频繁地经历危机、逐渐习惯于放弃许多基本人权——例如隐私、自由移动、就业和面对面的社交权利，而放松了对这种延续的警觉？

这绝不是想得太多了。“非常”来得越频繁，它与“正常”的界限就越模糊。历史早已清楚地证明：越是强弱和贫富悬殊的社会，强势者越有充分的动机和能力，利用这种模糊来加强自己的优势，令社会更加失衡。

因此，“疫情”和“疫情之前/后”，绝不是可以分开来理解和处理的，必须把它们当作一个整体来对待。我们当然要在医学的视野里追查COVID-19病毒究竟从哪里来，但我们更需要在社会和历史的视野中，追查为什么类似这样的病毒会接二连三地祸害人类。这一次疫情爆发以后，人们就已经指出，许多“正常状态”里的“发展”的业绩，都可能是类似的病毒疫情越来越多的深因。

在中国，2017年以来经济增速的持续下降，2018年以来中美关系的剧烈恶化，已经令越来越多的人开始担忧：我们是否正在遭遇一个远比一场传染病深广得多的危机？在经历了40年“正常”的经济发展的日子以后，中国似乎将再次进入一个危机越来越明显、危机感越来越普遍的非常时期。

当然，这样的估计并不只适用于中国。世界上越来越多的地区，可能都正在——或即将——进入深广的危机状态，而且，这些危机状态都不大可能很快地结束。

看起来，我们从2019年年底开始经历的那些可怕的状况，会在以后的日子里，以不同的程度反复重演，那些因此被激发起来的短期和狭隘的功利意识，也一定会跟着不断发作，持续膨胀。我甚至想说，这一次的COVID-19的疫情，是接着要来的、涉及面可能更大的全球危机的一次大规模的预演。

回到演讲开头提出的那个问题：21世纪的人类生活，是否会再次将集权体制推荐为国家政治和社会生活的一大选项？我觉得，中国和全球应对疫情的现状，大概会促使我们这么回答：对，有可能，但也只是有可能。

在经济层面首先爆发的全球危机，已经开始在政治、文化和社会等等领域，相继地爆发开来。西式民主体制的低能表现，“后真相时代”的来临，社会融合——从欧美到东南亚——的普遍的失败，都是明显的例子。

这一切都有利于集权体制的恢复名誉。局势越是紧张，崇拜强者的丛林法则就越有吸引力。许多人之所以因为疫情而重新看好集权体制，一个关键的原因，就是觉得世界已经失控，心情太悲观、太紧张了吧。

不过，上面这个回答的重点，却在后面的半句。即便在中国这个集权体制最为强大的地方，集权体制也不能单靠自己就能压制住疫情，现在被堆到它身上的那些“成功”，其实有很大的部分，应该归因于社会的主流价值观，归因于民众的向善之心，归因于许多别的社会和自然条件：没有这些因素的帮助，集权体制是对付不了疫情的。

更何况，21世纪才刚刚过去20年，一定有一些在这20年里大显神威的事物，被其后的80年证明是严重的祸害；也一定有一些在应对疫情之类危机时似乎利大于弊的事物，在面对更多别的社会要求时却暴露出明显的弊大于利。究竟21世纪会给出怎样的政治启示？我们还得从容地再看。

中国的现代作家鲁迅描绘过一种“地火”，它虽然被冰冻起来、掩埋于地下，却仍然可能在社会的危急时刻跃出地面，重新燃烧。在我看来，现代人的“身体”所承载的“生命”，在今天也和这个“地火”很相似，它在各种有形无形的严厉的“管理”之下，正在日益萎缩和变质，今天中国人的那种普遍的狭隘和自私的“生命至上”的意识，就是这萎缩和变质的一种表现。

但是，在包括COVID-19在内的各种全球危机的持续的刺激之下，我还是相信，人类的生命力势必会重新燃烧，它所孕育的民众的向善和向上之心，也会突破各种压制而焕发光芒。相比于专制、腐败和弱肉强食的丛林法则，我们总是更愿意生活在自由、平

等、民主和解放的环境里：这是人类的“身体”的最顽强的本能，无论什么“管理”都没有办法消灭它吧。

2021年 11月 上海

COVID-19 : 글로벌 위기의 대규모 연습

왕샤오밍 | 상하이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 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근대국가의 몸 관리 그리고 유교적 ‘身’”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강연을 맡게 되어 감사합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는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현대인의 신체는 어떻게 관리되는가”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 지구적 범위에서 “COVID-19의 통제”는 거의 “현대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중국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대명사 중 하나로 이해한다면, 저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COVID-19 통제의 성과와 특질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제에 적합한 토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COVID-19의 전 세계적 파괴력과 함께 놀랐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대다수 서구 국가들이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중국은 한 번의 통제 불능 후에 신속하게 통제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서구 국가의 의료조건과 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은 항상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COVID-19에 대한 방역은 왜 중국이 서구 국가들보다 잘 대처했을까요?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의 우수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고, 관영 매체가 아닌 다수의 중국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이외의 많은 평론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대 정치에 대한 커다란 문제 제기입니다. 만약 인류 정치의 발전 방향이 중앙집권과 관료의 전권 독점이 아니라 민주와 국민이 함께 의사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반대로 드러난 이 중국의 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현대인의 신체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권위주의 체제가 오히려 민주 체제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확대해 생각해 보면, 21세기의 인류 생활이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시사점을 주는 것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 정치에서 유일하거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며 권위주의도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어서 저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 큰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중국 정부는 이번 방역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정부는 자신의 힘만으로 코로나 발생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2. 만약 중국 정부가 자신의 힘으로만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사회의 주류 가치관은 어떠한 도움을 주었을까요?
3. 코로나 방역이라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사회 주류 가치관의 협력 외에 어떤 다른 힘이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1.

2019년 12월, COVID-19가 우한(武漢)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지 지방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고 그다음에는 하던 대로 대중과 상급 정부에게 사실을 은폐했지요. 이로 인해 거의 한 달 후에야 중앙정부는 코로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 달 동안

코로나는 우한에서 전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해외의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병폐를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정부는 너무 강하지만 사회는 너무 약소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의 다른 힘이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지지요.

첫 번째 직접적인 결과는 1월 23일부터 인구 천만의 대도시 우한이 백일 넘게 철저하게 봉쇄되었고 우한 시민은 이 거대한 재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결과는 COVID-19가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의 보편적인 불만이 일어났고, 민중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위기가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과의 범위는 더 큰데, COVID-19의 대유행으로 세계 다른 국가의 관영 매체와 상당수의 민중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중앙정부는 매우 강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시기를 완전히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극단적 수단인 ‘전염병 발생 상황을 초기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COVID-19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민중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래 하던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은 더욱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이로써 방역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는 방역 방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전력을 쏟아 한 곳에 집중하며 다른 분야는 희생을 감수한다.” 이는 방역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경제, 민생, 교통, 사적 관계, 커뮤니티 환경 등의 사회생활의 모든 요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격리/봉쇄에 중점을 둔다.” COVID-19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는 본능적으로 각종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도로 폐쇄, 도시 봉쇄, 공공서비스 중단, 대중교통

중단, 전국에 세워진 무수한 통행금지 검문소 등, 심지어 (병원 수용 불가인) 환자와 의심 환자의 집도 봉쇄해 버렸습니다.

2020년 2월 이후의 중국 정부의 COVID-19에 대한 전면적인 방역 조치는 2003년 SARS 상황일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서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방역 모델이 신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COVID-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국인의 신체와 생활도 사실상 이전에는 없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도 각지에서 계속해서 COVID-19가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전면적인 통제와 사회적 대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민중이 하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여기나, 민중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대규모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식의 이번 방역 모델은 민중에게 매우 높은 자제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부가 민중에게 금지령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금지 사항이 너무 많고 기간도 너무 길고 민중에게 끼친 손해도 너무 컸습니다. 따라서 민중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민중의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지만 이 금지령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든다면, 사적 만남과 생계 활동을 중단하거나 신속하게 국산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인 수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권위주의 체제로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사회의 주류 가치관이 정부의 금지령에 대해 민중이 동의와 지지를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 가치관’은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관이 아니라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실제로 신봉하는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2.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주류 가치관은 권위주의 정부가 협력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류 가치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류 가치관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 가치관은 자본주의식의 경제적 부에 초점이 맞춰진 가치관입니다. 1980년대에 서구식의 정치 민주와 문화개방을 열렬히 추구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추구를 기본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좁고 한정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으로, 종종 사회문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독한 ‘개인’에게 현실-특히 일당 독재의 정치 현실-이 너무 강대하여 변하기 어렵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류 가치관은 바로 계속 커지는 이런 부에 대한 추구를 핵심으로 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명’이나 ‘민주’ 같은 이상에 대해 회의가 드니 물질적 이익이 더 현실적이고 믿을 만해 보인다, 공적인 선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개인의 이득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눈앞의 것만 즐기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의 나의 몸으로 돌아오니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생명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이지요.

육체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자 내가 물질적 부를 누리는 전제 조건이며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인 겁니다. 오늘날 절대다수의 중국인에게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사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생명’은 많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중년과 청년에게는 ‘운동’과 ‘웰빙’이고, 노년층에게는 ‘건강’과 ‘장수’이며, 여성에게는 ‘다이어트’와 ‘미용’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영양학’과 ‘지능개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물론 ‘살아있음’이지요! ‘살아있기에’ 우리의 ‘몸’은 ‘생명’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중국의 주류 가치관이란 일종의 ‘몸’ 지상주의이자, ‘몸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 가치관이 권위주의 정부의 요구에 열렬히 호응하게 하고 정부의 금지령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도록 이끌었을 겁니다. COVID-19가 위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방역은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아무리 난폭하다 해도 우리의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뭐 그리 원망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주류 가치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많은 민중이 엄격한 각종 금지령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주류 가치관이 이해하는 ‘생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眾生)’처럼 천하에 예속되어 똑같은 가치를 지닌 ‘생명’이 아니라 뚜렷한 위계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라는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친소관계에 따라 원을 그리면서 ‘나’의 외부로 확장하는 겁니다. 원이 커질 때마다 생명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나’와 무관한 사람에 이르면 그 생명의 가치는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한이 봉쇄되자마자 중앙정부의 강력한 호소도 필요 없이 각 지역의 지방정부는 자발적으로 도로 폐쇄, 출입문 차단, 차량 통제, 비행 운행 중단을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안전거리 밖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중앙정부가 각지에 봉쇄완화를 거듭 명령하고 요구했지만 많은 기층정부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관한 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보험을 드는 것이 항상 “우선”인 것이죠!

최근 1년 동안 COVID-19의 무증상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자 ‘나’와 ‘나와 무관한 자’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조차도 집 밖으로 나와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애(自愛)’에서 나오게 된 ‘공공’의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을 강화하거나 서로 적대시하기 쉽습니다. 안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수록 자신의 안전 범위를 본능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안전 범위를 침범하거나 타인의 신체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생명 지상’이라는 가치관의 어두운 면이 거리낌 없이 드러난 것이지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민중은 “정말로 말을 잘 들었고, 정말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저는 “정말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중이 효과적으로 “말을 잘 듣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방역의 사회적 대가를 심화시켰습니다.

3.

권위주의 정부와 주류 가치관은 오늘날 중국의 가장 큰 두 가지 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중국이 비교적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힘의 협력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역량이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며, 이는 중국 사회의 자기 구제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을 예로 들면, 도시가 봉쇄되던 1월 23일에 4천여 명의 개인 승용차 운전자들이 자원봉사로 의료진들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200여 개의 숙박업소 사장들은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4만여 개의 방을요, 많은 주택단지에서는 자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장을 봐주고 약을 보내 주었습니다. ‘캣맘’이라고 불리는 한 시민은 백여 명의 지원자를 조직하여 코로나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길고양이들을 3개월이나 돌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한 민중의 의로운 행동들은 중국 정부의 사회동원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기층정부의 응급구조 활동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대부분 민중의 자발적인 행동에서 나온 겁니다.

4.

중국이든 다른 지역이든 현재 COVID-19의 위기 상황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올해 이후 언젠가는 종식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보여준 세계구조의 편향과 인류 생활의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보다 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위기가 속도를 내며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이 두 문제 사이의 관련성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각국 정부가 이번 코로나 방역을 실행한 많은 지역에서 격렬한 항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사람들이 “비상상태”와 “정상상태”의 깊은 상호작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상사태”는 바로 이전의 “정상상태”가 만든 것이며 더 많은 “비상상태”는 이후의 “정상상태”에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처럼 연달아 이어진 위기를 겪느라 정부와 민중은 모두 정치에 무감각해질 겁니다. 정부는 위기 이후에도 본능적으로 위기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엄격한 통제방침을 지속할 겁니다. 민중은 자주 겪는 위기로 인해 기본적 인권(프라이버시, 자유 이동, 취업, 대면 사회활동 권리 등)을 포기하는 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이 잦아질수록 ‘정상’과의 경계는 더 모호해질 겁니다. 역사가 이미 입증했듯이,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권력자는 더욱 충분한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이런 비상과 정상의 모호한 경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를 더욱 불균형하게 만들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 발생 상황”과 “코로나 이전/이후”는 절대로 분리해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의학적인 시야에서 COVID-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규명해야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시야에서 왜 이런 유사한 바이러스가 계속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발생 이후, 사람들은 “정상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업적이 모두 유사한 바이러스 발생 상황이 잦아지는 깊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18년부터 중미관계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발생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40년 동안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나날을 보낸 이후, 중국은 다시 더 분명해지는 위기와 보편화된 위기감을 느끼는 비상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추측은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기 상태로 진입 중이거나 진입 직전입니다. 게다가 이런 위기

상태는 그리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공포스러운 상황은 이후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재현될 겁니다. 이로 인해 야기된 단기적이고 편협한 실리 의식은 끊임없이 나타나며 계속 팽창하겠죠. 심지어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곧 도래할 더 광범위한 글로벌 위기의 첫 예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21세기의 인류의 삶은 다시 권위주의 체제를 국가와 사회 정치의 선택지로 추천할까요? 중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일어난 글로벌 위기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이미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구식 민주 체제의 무능함과 ‘탈진실(post-truth)¹의 시대’의 도래 및 사회통합(유럽 및 미주에서 동남아시아까지)의 보편적 실패는 모두 그 뚜렷한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긴박할수록 강자를 추종하는 정글 법칙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시 권위주의 체제에 전망을 두는 주요 원인은 세계가 이미 통제 불능이고, 너무 비관적이며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답의 핵심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중국처럼 권위주의 체제가 가장 강한 나라에서도 권위주의 체제에만 의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방역이 “성공”한 것은 사실 대부분 사회 주류 가치관과 민중의 선을 지향하는 마음, 다른 사회와 자연조건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의 도움이 없었다면 권위주의 체제도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물며 21세기는 이제 겨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20년 동안 신비한 위력을 보이던 사물들이 이후 80년 동안 심각한 재난으로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 [역주]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의미함.

같은 위기에 대응할 때 장점이 많았던 사물이 사회의 다른 요구에 직면했을 때는 그 뚜렷한 단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과연 21세기는 어떠한 정치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침착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의 현대 작가 루쉰은 얼려져 땅속에 묻혀있지만,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상으로 박차고 올라와 다시 타오르는 “지화(地火)”를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몸”이 담지하고 있는 “생명”은 지금도 이 “땅속의 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각종 유무형의 엄격한 “관리” 속에서 나날이 위축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중국인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명 지상”의식은 바로 이 위축되고 변질된 모습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OVID-19를 포함한 각종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류의 생명력이 반드시 다시 타오를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민중의 선을 지향하는 마음과 향상지심(向上之心)은 여러 가지 억압을 뚫고 빛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독재와 부패,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아니라 항상 자유와 평등, 민주와 해방의 환경 속에서 살기를 더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본능이며 무슨 “관리” 같은 것도 그것을 없앨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상하이에서

「COVID-19 : 글로벌 위기의 대규모 연습」에 관한 토론문

고 재 원 | 가톨릭대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공의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방식. 즉, 사회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봉쇄와 격리를 통해 전염 상황을 조기에 통제하는 방식이다.

둘째, 부와 개인에 중심을 둔 사회의 주류 가치관. 이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발현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협력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민중의 “선을 지향하는 마음”. 이것이 중국 사회의 자기 구제 능력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 생각을 몇 가지 덧붙이자면, 우선 그 시각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지역은 2003년 사스를 겪었고, 한국은 2013년 메르스를 겪으며 큰 고통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방역에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겪으면서 쌓였던 방역의 실패 및 수습 과정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방역체계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아울러 국민의 협조 속에 비교적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민중의 내면에 흐르고 있어서는 아닐까 생각한다. 근대 이후 성장한 개인의식과 함께 사회의 중요성, 즉 개인의 존립이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이 동아시아 지역 민중 사이에 좀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국가의 방역에 협조했다고 본다.

왕선생님은 이번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글로벌 위기의 예습이라고 제기하며, 이는 또한 현대 정치에 대한 일종의 커다란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왕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번 글로벌 위기를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특히 이번 글로벌 위기를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국가의 개입을 수용하면서도 이에 대해 민중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국가 또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둘째,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된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술은 민중이 코로나 방역에 협력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한국도 이런 디지털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역에 활용하였다.

21세기에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자본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사회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이고, 민중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즉, 국가-자본-인민이 디지털 기술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과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일제강점기 사형제(死刑制)와 그 담론

전 병 무 | 강릉원주대학교

1. 머리말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 중 가장 극형이다. 전근대 동양사회에서의 사형은 극히 정치적 행위였다. 사형의 재가나 사면은 국왕의 통치행위였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를 혼드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유지를 위해 사형은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사형은 그 주체가 일제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체제에 저항하던 세력은 일반 강력범죄와는 다른, 의병활동이나 항일운동에 수반된 범죄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사형은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행위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식민권력이 어떻게 사형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제와 지배체제를 유지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사형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¹ 현대 사회에서 사형제의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에 비해, 일제강점기 이와 관련된 담론이나 논쟁을 해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기의 사형제를 둘러싼 담론과 논쟁을 일제의 입장과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접근하고 어떤 근거로 주장을 전개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과 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사형제의 법률적 근거

현재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사형 범죄의 법 규정 및 기소, 재판, 집행 등에

1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형사정책』 25-2, 2013; 전병무,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 『역사연구』 40, 2021; 이승윤,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의 실재와 성격」, 『서울과 역사』 108, 2021.

대해서는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법이란 형사 실체법과 형사 절차법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² 형사 실체법은 형법과, 치안유지법 등과 같은 특별 형법을 포함한다. 형사 절차법은 형사 실체법에 근거하여 실제로 형벌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범죄의 수사, 기소, 심리, 판결, 상소 등의 절차에 관한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에 관한 법률인 감옥법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일제는 1910년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고 그 영토와 인민을 일본에 편입했지만, 일본 본국의 헌법, 형사법 등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법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내지 연장주의 혹은 동화정책을 취하면서도 식민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³

일제는 ‘한일병탄조약’ 체결 직후 1910년 8월 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조선의 입법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조선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재가를 얻은 후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제령’이라고 하였다. 다만 일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칙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령은 칙령에 의해 조선에 시행된 법률과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및 칙령에 위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제령 제1호 <조선에 있어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할 때 효력을 잃을 帝國法令과 韓國法令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한 명령으로 그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⁴ 이로써 일본 법령을 조선총독의 ‘제령’이라는 위임 입법 형식에 의해 依用하거나 조선의 사정에 맞추어 일본 법령을 부분적으로 변용한 형태로 적용하는 식민지적 법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⁵

2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 3: 형법』, 김영사, 2014 참조.

3 도면희,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이하 1910년대 상황은 이 논문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다.

4 『조선총독부관보』, 1910.8.30, “조선에 있어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

이에 따라 일본 본국의 형사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지 않고, 1912년 <조선형사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대한제국의 형사법인 『刑法大全』 등을 적용하였다. 『형법대전』은 총 680개조의 방대한 형법전으로, 형벌은 死刑, 流刑, 役刑, 禁獄刑, 笞刑 5종이었다.⁶ 제94조에 사형집행방식을 교수형으로만 하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는 집행절차와 제한을 규정하였다. 형법 각칙에 해당하는 제190조부터 제678조까지 각 범죄의 형량을 모두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절대적 사형을 규정한 경우만 121개에 이른다.⁷ 살인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엽적이며, 형벌의 고착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고 평가된다.⁸ 예컨대 제51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시에 사람을 상해한 자는 首從을 불문하고 모두 絞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법정형을 사형으로 규정하여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한 적정양형을 판결하기가 어려웠다.

1912년 3월 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 12개 법률의 의용과 이를 조선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형법대전』을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를 ‘한국의 형벌이 일본의 실체법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선형사령> 부칙 제41조의 특례조항을 두어, 『형법대전』의 사람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罪](제473조),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죄[故殺罪](제477조), 강도·절도살인죄(제478조), 親屬尊長살해죄(제498조), 강도·절도상해죄(제516조), 강도·절도강간죄(제536조), 특수강도죄(제593조) 등의 범죄유형은 그대로 존치시켰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집단적 흉도가 횡행하고 살인·강도 등의 범죄 양상이 잔인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⁹

5 도면희,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참조.

6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법사학연구』 20, 1999.

7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130쪽.

8 허일태, 「형법대전의 내용상 특징」, 『형사법연구』 20-2, 2008.

이는 1909월 11월부터 1915년 7월까지 활동했던 이른바 전환기 의병¹⁰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흉도”란 의병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형법대전』 제516조 등의 처벌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의병이었다. 의병들은 군수품이나 군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리상 강도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써 강력한 저항세력 중 하나인 의병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던 것이다.¹¹

조선총독부는 1917년 12월 제령 제3호 <조선형사령중개정>을 공포하여, 『형법대전』 규정을 아주 삭제하였다.¹²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형법대전』상의 형벌은 대개 각 죄가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관이 이를 적용할 때 감형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범죄의 질과 양형상의 균형을 맞추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 범죄수단의 지능수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죄와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¹³ 둘째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이르러 ‘민심의 안정 및 이전과 같은 집단적 강도 또는 잔학한 수단의 살인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⁴ 여기서 “집단적 강도”는 “집단적 흉도”와 같이 의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에는 완전히 이들을 제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형식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형사 실체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편 일제는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항일독립운동이 급증하자, 1925년 5월

9 사법부장관 國分三亥, 「朝鮮刑事令改正の要旨」, 『朝鮮彙報』 1918년 1월, 48쪽.

10 조동걸, 「의병전쟁의 1910년대 상황」, 『대한제국의병전쟁』(조동걸전집4), 역사공간, 2010, 참조.

11 김항기, 「일제강점초기(1910~1915)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사림』 72, 2020, 47-49쪽.

12 『조선총독부관보』, 1917.12.8.

13 사법부장관 國分三亥, 「朝鮮刑事令改正の要旨」, 49-51쪽.

14 조선총독부 법무국, 『朝鮮の司法制度』, 1936, 82쪽.

치안유지법 제정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자 하였다. 치안유지법은 ‘국체변혁’(조선독립)과 ‘사유재산제도 부인’(사회주의)을 도모하는 조직에 대한 처벌법이다.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과 사상을 탄압하는 핵심 법률이었다. 이 치안유지법은 일종의 특별 형법이었다. 일제는 이 법을 1928년 6월 개정하여 사형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다.¹⁵ 즉 제1조에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밖의 지도자적인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하였다. 특히 치안유지법은 조선사상범의 특수성, 범죄의 복잡성, 사상의 비전향 등을 이유로 일본 국내보다 과도하게 적용하여 항일운동가의 사형 선고에 악용되었다.¹⁶ 일본 국내에서는 이 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사례가 없었지만, 조선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¹⁷ 요컨대 1917년 이후 식민지 조선의 사형선고에는 일본 형법상 대역죄,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방화죄 등의 범죄와 특별 형법으로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벌칙 등의 범죄가 적용되었다.

각종 범죄에 대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은 재판소이다. 일제강점기 재판소 관련 법률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9년 통감부는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고등법원의 4급3심제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1910년 강점 직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통감’을 ‘조선총독’ 등으로 변경했을 뿐 통감부의 4급3심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과 조선인은 재판절차가 서로 달랐는데, 조선인의 형사재판은 대한제국의 『형법대전』, <민형소송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형

15 치안유지법의 개정 배경 및 취지, 내용 등에 대해서는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232-237쪽.

16 水野直樹, 이영록 역, 「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법 체제의 식민지적 성격」, 『법사학연구』 26, 2002.

17 水野直樹, 「治安維持法による死刑判決」, 『치안유지법제정90주년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2015.

10 참조.

사사건의 경우, 조선인 판사검사는 피고인이 조선인인 사건만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3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대폭 개정하여 ‘재판소’를 ‘법원’으로 고치고 4급3심제를 폐지하여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급3심제로 개편하였다. 또 지방법원 산하에 지청을 설치하였는데, 지청은 1심 법원이었다. 이때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 등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과 함께 식민지적 사법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조선인과 조선거주 일본인 모두 일본의 현행 형사 실체법과 형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 재판, 처벌되었다. 단 <조선형사령>에서 보듯 한 동안 식민지 특례조항이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과 재판 절차에 따라 형사피의자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최종 형이 확정된 날을 판결확정일이라고 한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일제강점기는 ‘控訴’라고 했음)는 선고 이후 7일 이내, 상고는 5일 이내로 규정하였다.¹⁸ 예컨대 1심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확정이 된다. 반대로 3심 고등법원에 상고했다면 상고기각으로 판결한 날이 판결확정일이 된다.

그렇다면 사형이 최종 확정된 사형수는 어떠한 형사사법적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을까. 형사소송법 및 감옥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가 확정될 때는, 검사는 속히 소송기록을 사법대신(조선은 총독)에게 제출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 사형의 집행은 감옥 내에서 검사, 재판소서기 입회 후 감옥의 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소서기는 집행시말서를 작성하고 검사, 감옥의 장과 함께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38~541조, 감옥법 제71~72조) 형장에는 검사 또는 감옥의 장의 허가를 얻은 자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¹⁹

18 治刑協會, 『行刑教科書(刑事訴訟法)』, 1939, 82쪽. 『행법대전』에는 항소와 상고 모두 5일 이내이다.

19 治刑協會, 위의 책, 99쪽.

식민지 조선의 경우, 사형 선고가 확정될 때 즉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고 사형이 확정되면 검사는 신속히 소송기록을 조선총독에게 보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은 이를 검토하여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고, 명령이 내려질 때는 5일 이내 이를 집행해야만 하였다. 사형의 집행은 형무소 내에서 검사, 재판소서기가 참가하여 형무소장의 주관 하에 형무관이 이를 집행하였다. 위 내용에는 없으나 보통敎誨師가 사형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참가하였다. 사형집행이 완료되면 재판소서기는 집행시말서를 작성하고 검사, 형무소장과 함께 모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6년 5월 이후는 사형집행이 완료되면 검사가 집행명령서 도달 일시 및 사형수의 본적, 주소, 성명, 죄명 및 집행을 한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 “사형집행 완료보고”를 감독 상관을 거쳐 곧바로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도록 通牒으로 규정하였다.²⁰ 아마도 집행시말서가 “사형집행완료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제는 1920년 10월 <刑死者의 墳墓·祭祀·肖像 등의 取締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1조~제7조)을 공포, 시행하여, 사형집행자를 추모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률로 금지하였다.²¹ 즉 사형자의 사진, 기타 초상 혹은 필적류를 공연히 진열하거나 반포하여 사형자를 상찬하는 행위 또는 추모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혹은 구류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반인도적 법률이 당시 일본 국내에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는 특히 항일운동가 즉 정치범의 사형 이후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20 『조선총독부관보』 1916.5.6, 「死刑執行濟報告에 관한 件」

21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정과, 『朝鮮刑務提要』, 朝鮮治刑協會, 1927, 1119-1120쪽. 刑死者란 사형 집행자, 사형집행 전 사망자, 무기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중 사망자를 뜻한다.

3. 사형집행의 추이와 특징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전체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인원수를 알려주는 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0~1942년판)』(이하 『총독부통계연보』로 약칭함),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이하 『총독부관보』로 약칭함), 『조선사법일람(1942~1943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비교, 교감하여 종합하면 전체 사형집행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표 1〉 전체 사형집행 인원수(1910~1945년)

연도	사형자수	연도	사형자수	연도	사형자수	연도	사형자수
1910	132	1920	36	1930	11	1940	11
1911	94	1921	45	1931	13	1941	9
1912	73	1922	39	1932	18	1942	30
1913	54	1923	27	1933	22	1943	26
1914	54	1924	11	1934	16	1944	26
1915	49	1925	18	1935	14	1945	15
1916	53	1926	16	1936	33		
1917	39	1927	25	1937	22		
1918	47	1928	24	1938	29		
1919	11	1929	27	1939	23		
소계	606	소계	268	소계	201	소계	117
합계	전시기(1910~1945년): 총 1,192명, 연평균 33.11명, 월평균 2.75명 제1기 무단통치기(1910~1919년, 약 10년): 총 606명(51%), 연평균 60.6명 제2기 문화통치기(1920~1936년, 약 16년): 총 395명(33%), 연평균 24.68명 제3기 민족말살기(1937~1945년, 약 09년): 총 191명(16%), 연평균 21.11명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관보』 등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사형당한 전체 인원(조선인·일본인·중국인 포함)은 총 1,192명으로, 연평균 33.11명, 월평균 2.75명에 달한다.

전체 사형집행수의 인원을 시대별로 보면, 1910년대가 가장 많고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다시 약간 증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이른바 3시기 즉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제1기 무단통치기는 총 606명이 사형집행을 당하였다. 이는 전체 사형집행수의 약 5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사형집행수 평균도 연평균 60.6명, 월평균 5.05명에 달하여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여기에는 후술하겠지만 상당수의 의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왜 무단통치기라고 불렀는지를 사형집행 인원수를 통해서도 재삼 확인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1919년도의 사형집행 인원수가 11명으로 가장 적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과 관련된 사형의 선고와 집행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3.1운동의 촉발에 당황한 일제가 사법절차를 통한 합법적 수단 대신에 불법적인 학살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²² 그런데 3.1운동이 폭증하자 일제의 치안당국은 33인의 민족대표를 비롯한 폭동의 양상을 보인 3.1운동 사건들에 대해 사형이 가능한 일본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³ 내란죄 적용 시도는 조선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산되었으나, 시급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당국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²⁴ 다른 측면에서는 3.1운동으로 행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제2기 문화통치기는 총 395명이 사형집행을 당하였다. 전체 사형집행수의 약 33%를 차지하고, 사형집행수 평균은 연평균 24.68명, 월평균 2.05명에 이른다. 제1기와 비교하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3.1운동 직후인 1920년부터 1923년까지 147명이 사형을 당하였는데, 제2기 사형집행수의 37%에 해당할

22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143쪽. 박은식은 3.1운동으로 희생된 인원을 7,500명으로 추산하였다.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사, 2008, 198쪽)

23 3.1운동과 내란죄의 법률 문제는 사사가와 노리카스, 「3.1독립운동 관계 판결에 의거하여-내란죄를 둘러싼 판결의 점검」, 『3.1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지식산업사, 2019 참조.

24 장신,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18, 2007, 157쪽.

정도로 적지 않다. 아마도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했지만, 이반된 조선사회를 강력히 통제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주사변을 전후로 구분하면 1924년부터 1931년까지 약 8년 사이는 총 145명이 사형을 당했고, 사형수 평균은 연평균 18.12명, 월평균 1.51명이다.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약 5년 사이는 103명이 사형을 당했고, 사형수 평균은 연평균 20.06명, 월평균 1.71명이다. 여기에는 1936년 7월 간도공산당사건 관련자 18명의 집단 사형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만주사변 이후 사형집행이 약간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제3기 민족말살기는 총 191명이 사형집행을 당하였다. 전체 사형집행수의 약 16%에 해당한다. 사형집행수 평균은 연평균 21.11명, 월평균 1.82명이다. 이는 제2기 초반 즉 3.1운동 직후를 제외한 시기의 사형수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여기에는 1942년 7월 백백교사건 관련자 14명의 집단 사형이 포함되어 있다.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을 전시체제로 속박하면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형집행이 늘어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죄명별, 형무소별 사형인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총독부통계연보』, 『조선사법일람』은 일제의 사형집행에 관한 연도별 통계수치만 있을 뿐, 사형수의 인적사항과 죄명, 사형집행 장소 등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개인별 판결문을 제외하고 사형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총독부관보』가 유일하다. 단 1910년의 경우, 『총독부통계연보』에 132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총독부관보』의 발행이 10월부터 시작되어 22명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10명을 제외하고 1,081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총독부관보』의 사형집행 인원은 1,071명이다.²⁵ 『총독부관보』는 현재 구할 수 없는 결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형수

25 항일독립운동가 중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된 몇몇 분들의 경우, 현존하는 『조선총독부관보』에서는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의병장 蔡應彦의 사형집행 기록은 없다. 아마도 결호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락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채응언과 같은 날 사형된 1명 총 2명은 사형수 전체 통계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한 필자 개인이 방대한 분량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 했음에도 입력 과정에서 혹여 누락된 부분도

의 각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경향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논의의 전개는 이 1,071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1,071명의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총독부관보』에 기록된 공식적인 첫 사형수는 의병장 奎海山이다.²⁶ 이에 따르면 그는 1910년 7월 9일 대구공소원에서 내란 및 모살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8월 23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집행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대구감옥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사형수는 평북 선천의 金城珍甫이다. 그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1945년 3월 8일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1945년 6월 28일 사형이 집행되었다.²⁷

다음은 전체 사형집행의 죄명별 인원을 단순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죄명별 사형집행 인원수

	살인	강도 살인	친족 살인	간통 살인	강간살인 강도강간	내란·보 안법·폭 발물	제령	치안유지 법	방화	기타	소계
1910년대	136	238	16	25	8	1	0	0	58	2	484
1920년대	99	117	0	0	1	8	37	5	2		269
1930년대	75	111	1	0	0	1	0	7	6		201
1940년대	46	63	0	0	3	0	0	4	1		117
합계	356	529	17	25	12	10	37	16	67	2	1071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없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조선총독부연보』와 『조선총독부관보』 간의 사형집행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연도는 다음과 같다.

	1912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8년	1920년
총독부연보	73	54	49	53	47	36
총독부관보	68	53	46	51	46	39

26 『조선총독부관보』, 1910.9.1. 단 여기에는 金垂鏞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奎垂鏞의 오자이다. 전해산의 본명은 奎其弘이고 垂鏞은 字이고 海山은 號이다.

27 『조선총독부관보』, 1945.7.27. 그런데 1944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이병호의 증언에 따르면 8월 15일 해방 당일 두 세 차례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한국방송공사, 「3.1특집 다큐멘터리 서대문형무소」, 2011년 3월 1일 방송)

한 가지 죄명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단순한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없고, 다른 죄명과 함께 중첩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통계처리를 위해 죄명을 단순화시켜, 살인은 모살, 고살, 살인미수 및 사체유기 등을, 강도살인은 강도모살, 강도고살, 강도치사, 강도상인, 강도 등을, 방화는 강도방화, 살인방화 등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강도살인 529명(49%), 살인 356명(33%), 방화 67명(6%), 제령 37명(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죄명의 구체적 사례를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항일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강도살인의 경우, 의병장 金尙台와 鄭春瑞는 강도 및 강도窩主犯으로 기재되었고, 의병장 尹國範도 강도 및 강도살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최후의 의병장’ 蔡應彦은 강도살인죄가 아닌 의병의 명분으로 사형시키라고 끝까지 주장하였다.²⁸ 살인의 경우도,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체포된 李在明은 모살미수 및 고살범으로, 총독 사이토를 암살하고자 했던 金호문 사건의 주인공 宋學先은 살인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방화에서 강도방화를 따로 설정한 것은 의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병장 鄭敬台, 全聖範, 金鍾根은 각각 강도방화 및 고살범, 모살 및 방화, 강도살인방화 등의 죄명으로 사형 당하였다. 따라서 죄명만으로 일반범과 항일운동가 즉 정치범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죄명을 보면, 내란, 보안법 및 폭발물취체 등 위반 10명, 제령 제7호 위반 37명, 치안유지법 등 위반 16명 등 총 63명이었다. 치안유지법의 폐해에 대해 연구해 온 水野直樹는 치안유지법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된 항일운동가는 총 52명으로 파악하였다.²⁹ 위의 사례들도 대부분 단독 죄명만으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현재 전체 사형집행수 1,071명 중 국가보훈처 공적조서에 등재된 독립유공자

28 홍영기, 「蔡應彦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2006, 23-24쪽.

29 水野直樹, 「治安維持法による死刑判決-植民地朝鮮での判決を分析する-」, 『치안유지법제정90주년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2015.10, 立命館코리아연구센터.

인원수는 총 129명이다.³⁰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지 못한 인원수가 최소 2배 정도 많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죄명 등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이후의 특징은 <표 3>에서와 같이 형무소별로 사형집행의 인원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형수의 사형집행은 서대문형무소(경성감옥), 평양형무소(평양감옥), 대구형무소(대구감옥) 등 3곳의 형무소(감옥)에서만 실시되었다.³¹ 그 이유는 경성(경기, 경성부, 강원, 충청 권역), 평양(평안, 함경, 황해, 평양, 의주 권역), 대구(전라, 경상, 부산, 대구, 목포 권역)에 복심법원 및 고등법원(경성)이 소재하여 사형수가 항소하면 해당 지역의 형무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제1심인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사형이 확정되어도 서대문형무소, 평양형무소,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당시 사형수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기결수이지만 行刑상으로는 사형집행과 동시에 기결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사형수는 사형집행이 될 때까지는 미결수로 처리되었으므로, 구치소나 미결감에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심법원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구치’ 기능이 있는 서대문형무소, 평양형무소, 대구형무소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던 것이다.

<표 3> 형무소별 사형집행 인원수

연대별	서대문형무소 (경성감옥)	평양형무소 (평양감옥)	대구형무소 (대구감옥)	미상	소계
1910년대	138	157	179	10	484
1920년대	101	122	46		269
1930년대	90	71	40		201
1940년대	47	39	31		117
합계	376	390	296	10	1,071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30 2022년 1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31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196쪽.

평양형무소(평양감옥) 390명(36%), 서대문형무소(경성감옥) 376명(35%), 대구형무소(대구감옥) 296명(28%), 미상 10명(1%) 등으로 나타났다. 평양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도시 발달에 따른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항일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유독 1910년대 대구감옥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의병의 사형집행으로 판단되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구복심법원(대구공소원)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1930년대부터 서대문형무소의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이는 사상범이 급증하자 1935년 별도로 총283개의 감방에 수용 인원 600여 명의 사상범 전용 구치감을 신축하였다는 점³²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4. 사형제를 둘러싼 담론과 논쟁

1920년대부터 간간히 외국의 사형폐지 동향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특히 1920년대 말 사형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이유와 배경은 일제의 형법개정 작업이었다. 일찍이 일제는 1900~1902년까지 일본제국의회는 세 차례 연속으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을 줄이려는 입법을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³³ 이후 일제는 각국의 형사정책이 징벌주의에서 교화주의로 변화하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야하다는 여론이 일자 형법개정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변화에는 서양 근대에서 고문과 사형의 철폐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근대적 형사법의 초석을 놓은 기념비적 고전인

32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61-64쪽.

33 이덕인, 앞의 논문, 132쪽.

체자레 벅카리아(1738-1794년)의 저서 『범죄와 형벌』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 책이 1929년 일본에 번역, 소개되었다.³⁴ 그래서 1930년 형법개정작업을 위하여 전문가집단으로 형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형제에 대한 존폐 여부를 대심원 및 공소원 판사와 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3개조의 사형폐지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형수를 무기형에 처하고, 둘째 감형된 죄수의 수입은 3분의 1을 피해자에게 주어 위로하며, 셋째 죄수의 수입 일부는 국가의 형벌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 형법에서 사형폐지는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는 사상을 탄압하는 핵심 법률인 치안유지법 개정이 아닌가 한다. 일제는 일종의 특별 형법인 치안유지법을 1928년 6월 개정하여 사형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다. 이는 항일운동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치안유지법만을 적용하여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간도공산당사건의 주현갑이 대표적이다.

정리하자면 일제는 당시 형사정책이 징벌주의에서 교화주의로 변화하던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할 수 없어서 형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식민지 조선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무렵 고등법원 검사이자 사상검사로 유명한 伊藤憲郎이 조선에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³⁵ 그는 ‘18세기 이후 사형폐지론 등장하였고 현재의 일반적인 추세는 폐지이다. 일본 형법개정안에서도 사형실행의 경우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진다. 조선에 있어서 범죄의 질적 관찰자료로써 사형존폐론의 참고자료로 삼고 싶다’고 하며, 글의 목적으로 밝혔다. 이어서는 그는 ‘범죄의 원인이 분노, 원한, 질투 등 피해자의 과실로 기인한 것인가 혹은 완전히 色慾遊蕩, 利慾 등 범인만의 放恣心에 의한 것인가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 즉 원인 고찰에

34 團藤重光 著, 김희진 번역, 『死刑廢止論』,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참조.

35 伊藤憲郎, 「朝鮮に於ける死刑の考察」 『警務彙報』 제281호, 1929.9.

의해 그 나라 그 지방의 사회적 사정, 習俗, 民度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형수의 범죄와 그 동기원인”으로 조선에서 사형이 집행된 14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1, 7, 8, 10번 사례는 本夫殺, 제2, 5, 6 사례는 生活難에 의한 범행, 제3 사례는 賣名에 의한 범행(송학선 사건), 제4 사례는 질투에 의한 범행 등으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 범주로 구분한 것이 이른바 ‘本夫殺害’이다. 즉 조선 여성의 남편살해이다. 이 문제는 일찍이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이었던 國分三亥가 제기한 것이다. 그는 1911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인 여성 범죄자 318명 중 남편살해 범죄수는 총 182건에 이른다고 하면서, ‘일본에는 없는 조선 특유의 범죄’라고 하였다.³⁶ 그 이유는 早婚 등 조선 가족제도의 결함과 그것이 초래한 폐해 및 조선 부인의 성질 등 조선의 야만성과 미개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하였다.³⁷ 일제는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일제의 주된 관심사는 의병활동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른바 ‘賣名’이다. 伊藤憲郎이 매명의 사례로 든 것이 송학선 사건이다. 주지하듯이 송학선은 금호문에서 조선총독 사이토를 암살하려다 실패하였다. 즉 항일독립운동사건을 매명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다. 일제의 사상검사 나아가 일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는 생활난에 의한 사건이다. 조선은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여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조선의 범죄 유형과 동기를 1)조선의 결혼제도 불합리, 2)경제사정이 빈곤함에 기인한 범죄, 3)사상적 사정이 어떤 종류의 흥행을 야기할 우려 등으로

36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917년 3월.

37 ‘본부살해’에 대한 연구는 아래의 글을 참조. 장용경, 「식민지기 본부살해사건과 여성 ‘주체」, 『역사와 문화』 13, 2007; 전미경, 「식민지기 본부살해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아시아여성연구』 49-1, 2010; 홍양희,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사학연구』 102, 2011.

정리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사회사정이 있고 또 습속민도가 있는 조선에서 각개의 범죄를 판단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것을 참작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꺾박한 객관적 狀勢는 도리어 사형의 威嚇力으로써 臨하는 것에 의해 사회의 안정을 保持하고 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에 있어서 저반의 사정에 있어서, 지금 사형폐지의 일을 할 것인가, 前記와 같은 환경에 있고 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무리는 용이하게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형법개정안에서 사형범위축소에 관한 점이 어느 정도 있는 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장래에 만약 이 일이 조선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조선으로서는 그 특수사정을 대한 熟慮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사형찬성론자의 근거인 1)사형제도가 갖는 범죄에 상응하는 應報的 처벌의 법적 확신, 2)형벌의 威嚇를 통한 예방 효과, 3)범죄자의 완전한 격리 등을 그대로 따르며, 특히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1920년 말부터 조선 일보는 <세계 각국의 사형폐지운동> 제목으로 외국의 사형폐지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였다.³⁸ 그 의도는 세계의 문명국에서는 점차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니, 일본도 문명국이라면 사형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변호사 이인 역시 형사정책의 추세를 보더라도 문명국에서는 사형을 폐지한다고 살인사건의 재판에서 변론하였다. 1928년 2월 신간회 김천지부는 정기대회에서 정치문제 토의 내용에 ‘사형폐지에 대한 건’을 포함시켰다.³⁹ 宋鎭禹는 잡지 『삼천리』에 “사형폐지론”을 게재하여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고,⁴⁰ 변호사 金堧源 역시 『동아일보』에 “法理學上으로 본 사형의 존폐론”을 게재하여 폐지의 논리를 펼쳤다.⁴¹ 특히 조선일보는 간도공산당사

38 『조선일보』 1928.1.6.

39 『동아일보』 1928.2.2.

40 송진우, 「사형폐지론-人道上과 刑事政策上으로-」, 『삼천리』 제6호, 1930년 5월, 42-43쪽.

41 『동아일보』 1931.9.6.

건에서 대규모의 사형선고가 있자, 1936년 2월 21일 사설 <간도공산당사건공판>에서 사형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들의 사형폐지의 논리는 세계 각국의 형사정책상 應報刑에서 教化刑으로의 변화 대세, 법리론, 인도주의적 입장 등에서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형폐지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송진우의 글을 검토해보자.

“사형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가튼 인류를 참아 죽일 수 업느니라 하나는 人道主義的 見地에서와 또 한 가지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刑을 가하는 본래의 뜻이 그 범인으로 하여금 후회하고 改過를 식히는데 있다는 刑事政策上 見地에서 부르지르려 한다. 大體 이 사회의 모든 이익은 될 수 있는대로 여러 成員에게 보편적으로 논이워 있지 안으면 안된다. 만일 多數人에게 빈곤과 불행이 있고 少數人에게 행복이 있게 된다 하면 이것은 정당한 일이 못될 터임으로 법률은 이것을 억제하고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實例를 보면 엇던가. 여기 재산상의 절도죄가 있다 하자. 그는 빈곤과 절망에서부터 이러난 행위에 不外할 것이다. 어대서 부자가 도적질을 하였다는 例가 있든가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이길래 엇지할 수 업서 이 범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姦通 嬰兒殺害 등 모든 범죄의 원인까지 따져보아도 거기에는 도덕상으로나 재산상으로 불우한 처지에 노한 사람들이 대부분 범행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할 것이 업시 오늘날 범죄의 根源은 貧과 無智에 그 대부분이 있는 터인즉 社會成員의 각자에게 균등한 교육을 할 기회를 줄 것이며 衣食住에 대한 불평부족을 제거하는데 전력하여야만 범죄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2

이미 2, 3개월 내지 5, 6년 정도의 監獄囚의 범죄사실을 들추어 볼지라도 대부분이 빈곤과 절망(물론 其中에는 성격이 불량하고 好殺性者도 있겠스나)에서 나온 것이 어늘 그보다 더욱 큰 범죄자-즉 死刑囚가튼 자의 사실을 따져 본다 할지라도 가튼 性質의 擴大를 볼 수 있슬 것이다.

그런데 사형이라함은 「一個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그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일을 필요로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할 것으로 되었다. 그런다고 가령 었든 한 사람을 죽인 그 자를 또 죽인다 하면 국가는 결국 국민 두 사람을 제거하는 결과를 이루며 또 殺人者死로 犯行者를 못 죽인다하면 그것은, 또한 국가자체가 살인을 하는 모순에 떠러지지 않을가 하물며 凶暴한 殺人者의 殺人經路를 보면 대개는 그 순간의 變態感情과 變態心理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變態인지라 일순간 뒤는 다시 平常態度에 도라갈 것인즉 그는 대개가 후회하는 것이 예이라 한다. 후회는 벌써 改過의 시초어든 이제 국가는 그를 벌하되 모든 재산 중 가장 고귀하며 또 절대적인 사형으로써 臨한다면 그의 改過는 效力업는 것이 되고 더욱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빼앗고 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누가 인간에 대하여 同類를 죽이는 것을 可타하라 인류의 양심은 이를 허락지 않을 것이다.

3

그러면 일부에서는 무르리라. 사형을 폐지하면 살인가튼 사회에 極惡한 해독을 끼치는 兇罪가 激增할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사형을 폐지한다고 殺人數字가 어질지언정 증가하리라고는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 사형에 대하되 終身囚 혹은 10년 15년 하는 長期囚로 할진대 容色이 초췌하고 積年重刑에 우는 그 참장을 보고 일반 사회인은 「나도 남을 죽이면 저 者와가치 生地獄에 가는구나」

하는 繼續的의 공포를 늦기게하여 그 순간만 공포심을 격화케 하는 사형에 비하여 훨씬 더 만흔 효과가 잇을 것이다. 그럼으로 사회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도 사형폐지는 死刑存置보다 勝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반면으로 終身獄役은 長期의 고통의 分量을 合算할진대 오히려 사형밧기보다 더 고통이 되지 아닐 것이냐 할 것이다. 그는 혹 그럴는지 모르리라. 그러나 囚人自身の 생각에는 어느 때 特赦가튼 것이 잇스면 幸히 天日을 보겠거니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둘째는 양심에 대한 반성을 만히 밧어 선량한 인간이 되려 하는 노력을 싸할 것이니 이것은 長期의 고통을 능히 참어나가는 행복을 줄 것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인류로의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또 改過遷善식히는데 根本目的이 잇는 刑事政策上으로 보아 사형이란 조치 못한 형벌방법인즉 폐지되기를 부르

지으며 더군다나 조선가치 남다른 곳에서는 사형이 하로 급히 업서지어야 할 것인 줄 아노라.”

송진우는 형사정책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사형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선 조선의 범죄가 빈곤과 절망, 무지에 비롯되었다고 보고, 형사정책상 사형보다는 인류의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개과천선시키는 무기형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인에 대한 사형은 국가가 살인을 인정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인간의 개과천선의 기회를 빼앗는 사형은 인도주의상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근거인 1)법리론-범죄의 예방 효과 없음, 사형이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음 2)인도주의적 입장 등과 유사한 것이다.

5. 맺음말

「일제강점기 사형제(死刑制)와 그 담론」에 관한 토론문

변 은 진 | 전주대학교

1. 이 글은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에 대해, 특히 그 법률적 근거의 변천 과정, 통계 등을 통한 실제 사형집행의 추이 분석, 사형제를 둘러싼 관계와 민간 지식층의 담론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근현대 사회에서 사형제는 인간의 몸 그 자체와 인권이라는 근대적 가치, 이 둘의 ‘사이’를 교차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형제도는 그 기원을 일제강점기에 두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학계의 현실에서 이 글은 여러 각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주로 항일운동을 연구해오면서도 관련 법 체계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본 토론자로서는 특히 많은 공부가 된 점, 깊이 감사드린다. 아직 논문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주제는 사실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를 연구해온 발표자만이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가 상당히 기대된다. 다만 현재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다소 넓은 편이어서, 추후 지금의 4장(담론) 부분은 좀 더 보완하여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2. 머리말(맺음말 포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근대에 비해 형벌제도, 특히 ‘신체형’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 이에 기초해볼 때 일제강점기 형벌이 대체로 신체형(『형법대전』에서의 형벌은 死刑, 流刑, 役刑, 禁獄刑, 笞刑 5종 - 2쪽)에 국한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1910년 이전(특히 1907년 사법권 침탈 이후 1910년까지) 사형제와의 차이, 1945년 이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형제로 이어진 부분과 그 성격, 대단히 미약하지만 기존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

3. 1917년 <조선형사령중개정> 공포와 『형법대전』 규정의 삭제는 발표문에 언급되었던 두 가지 의미, 즉 법률적 관점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죄와 벌’에 관한 ‘근대적’인 형법 체계로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당시 일제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서구식의 일반적인 ‘식민지 관계’로 정리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좀 더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4. 사형집행자를 사후에 추모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금지한 반인도적인 법은 정치범, 즉 항일운동가의 영향력 통제를 위한 장치로서 주목된다. 혹시 이러한 조항이 당시 일본 내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는지, 오늘날에도 존속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5. 통계자료를 통해 사형집행의 추이를 분석한 것은 특히 돋보인다. 물론 이 글에 서술되어있다시피 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불법적 학살’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었고, 일제 당국의 통계가 당대의 모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예컨대 3.1운동으로 사형 집행된 조선인이 147명만은 아닐 것 등등). 하지만 그동안 막연하게 일제강점기에 사형이 많이 집행되었다고만 알려져 있었지, 실제 현황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형집행 총수가 1,071명이었다는

(앞에서는 1,192명, 그렇다면 중국인·일본인 등이 121명인가?) 등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다. 한 가지 개인적인 궁금증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소가야 스에지의 『우리 청춘의 조선』을 보면 ‘간도공산당 사건’ 사형수 박익섭이 서대문형무소 구치감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유독 혼자서만 허리에 쇠사슬을 감고 거기다 수갑까지 찻는데 양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쇠사슬로 또 한번 고정되어 있었다.”(135쪽. 이소가야는 간도공산당 사건 사형수가 당시 신문에 보도된 18명이 아니라 22명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함)라고 했는데, 당시 정치범 사형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었는지, 이것이 특수한 상황인지 궁금하다.

6. 앞서 언급했다시피 식민지 조선에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담론은 좀 더 보완되어 별도의 논문으로 완성되었으면 한다. 조선총독부 등 일제 당국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내각, 일본사회 내의 지식층 등의 여론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조선 사회 내에서도 그냥 지식층 일반이 아니라 법조계 지식층과 일반 지식층,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등의 사회운동가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 보완과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혹시 조선인 가운데도 사형제 존속의 견해를 표방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제2부

근대 인간과 몸

